



# MINI Market Report

국가	베트남
제품	상온떡볶이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CONTENTS

<b>I. 베트남 마케팅 방안</b> .....	<b>1</b>
1. 베트남 시장 특징 .....	1
2. 베트남 시장 진출 TIP .....	1
<b>II. 베트남 시장 정보</b> .....	<b>4</b>
1. 수입추이 .....	4
2. 소비트렌드 .....	5
<b>III. 베트남 가격 정보</b> .....	<b>8</b>
<b>IV. 베트남 유통 정보</b> .....	<b>9</b>
1. 한국 식품 유통 .....	9
2. 베트남 유통 FLOW .....	10
3. 베트남 유통 구조 .....	11
4. 베트남 유통채널 .....	12
<b>V. 베트남 통관 정보</b> .....	<b>16</b>
1. 관세현황 .....	16
2. 통관 절차 .....	16
<b>VI. 베트남 검역 정보</b> .....	<b>20</b>
<b>VII. 베트남 라벨링 정보</b> .....	<b>24</b>

※ 참고자료

## I 베트남 마케팅 방안

### 1. 베트남 시장 특징

- 베트남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떡볶이 양념장 및 떡볶이 떡 판매
  - 베트남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떡볶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인스턴트 라면, 쌀국수, 커피를 주로 취급하였음
  - 이베이 베트남 사이트에서는 한국제품 해찬들에서 제조하는 떡볶이가 판매되고 있지만, 그것은 떡볶이 양념장 이였으며, 온라인 검색 결과 베트남에서 떡볶이는 인스턴트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떡볶이 양념장 그리고 떡볶이 떡을 각각 팔고 있음
- 한국산 식품 유통 변화 긍정적
  - 과거에는 한인 수입상은 한인마켓 공급 중심으로 판매했었으나 최근 한국 식품 수입 증가, 현지인의 한국 식품 관심 증가 등으로 현지유통 매장으로 납품하는 경우 증가
  - 아직까지는 한국인 수입상이 가장 많으나 최근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현지인 수입원 한국 식품 취급 증가 추세이며, 한국 농식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나 일부는 핸디캐리, 이삿짐화물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2. 베트남 시장 진출 주의사항

□ 식품 보호무역 장벽이 높고 수출·입 인허가 등 매우 까다로운 편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유통하기에 앞서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기술 규정과 식품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인가 절차와 식품의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검역·등록 절차가 그것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과자·음료·유제품·주류·라면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적용
- 이 가운데 1단계는 기술규정 또는 식품안전 규정 준수여부의 확인으로 해당 가공식품이 기술규정에 명시됐다면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련 서류 일체는 하노이 소재 베트남보건부(MoH) 산하 베트남식품청(VFA)에 내며 VFA의 확인작업을 거쳐 증명서가 발급
- 2단계로 지정된 검역기관은 식품 품질·위생·안전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기관에서 표본검역, 서류검사 등 검역방법을 결정하며 수입업체는 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요구를 충족하는 증명서나 서류 검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됨
- 절차만 놓고 보면 베트남의 관련 법령은 매우 명확하고 단계별로 적합해 보이지만 실제 상품을 유통하기까지 베트남 바이어와 외국 공급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료적 형식주의, 투명성 부족, 검사기간의 일관성 결여 때문
- 호찌민 시내에서 한국 식품 수입딜러로 활동 중인 반 퐁 푸라는 회사는 “기술 및 식품안전 규정 관련 인가서류를 발급받기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고 강조. 식품청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원재료 리스트, 영양성분 기재 내용은 물론 심지어 서명 위치까지 트집을 잡는 것으로 알려짐
- 제출 서류 중 수출업체에서 발급됐음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COA)는 식

---

품청의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COA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식품청은 건별로 명확한 지침 없이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의 자료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반면 기술 및 식품안전 규정 인가절차에 비해 지역별 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검역·등록은 식품청만큼 관료주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세관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 상품을 직접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통관 지연을 야기하며 검역기준 미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21일이 걸림

## II 베트남 시장 정보

### 1. 수입추이

- 상온떡볶이는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며 가장 근접한 HS CODE는 「1901.90」으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1901.90	기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베트남의 「1901.90」 류 2013년 수입통계

순위	수출국가	무역지표				
		수입액 (1,000 USD)	점유율 (%)	수입량 (톤)	수입단가 (미달러/수입량(톤))	수출량증감률 (2009년 대비, %)
	World	204,005	100	-	-	37
1	Singapore	90,125	44.2	0 (혼합)	-	208
2	Malaysia	27,466	13.5	10,707	2,565	23
3	Thailand	25,040	12.3	7,728	3,240	3
4	Germany	24,905	12.2	7,471	3,334	81
5	New Zealand	11,843	5.8	2,282	5,190	-31
6	Netherlands	10,962	5.4	2,899	3,781	-10
7	United States of America	6,862	3.4	2,072	3,312	139
8	France	1,718	0.8	534	3,217	46
9	Australia	1,473	0.7	441	3,340	22
10	Switzerland	1,384	0.7	222	6,234	-
∴	∴	∴	∴	∴	∴	∴
12	K o r e a , Republic of	399	0.2	240	1,663	6

출처 : trademap (http://www.trademap.org/)

- 베트남은 2013년 2억 400만 5,000 달러 규모의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

---

제 식료품」을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등이 있음

- 베트남의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최대 수입국은 싱가포르로, 2013년 수입규모는 9,012만 5,000 달러이며, 이는 2009년 대비 208% 증가한 수치임
-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2,746만 6,000 달러, 태국에서 2,504만 달러 규모의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각각 23%, 3% 증가한 수치임
- 베트남은 2013년에 한국으로부터 39만 9,000 달러 규모의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임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태국의 2013년도 수입량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 추세임(싱가포르: 208%, 말레이시아: 23%, 태국: 3%, 독일: 81%, 한국: 6%)

## 2. 소비트렌드

### □ 베트남 경제성장 및 시장 동향

- 베트남은 최근 몇 년 간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소매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성향이며, 중국산 식품 유통이 원활한 이유도 가격 경쟁력 때문임. 이에 더해 품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가 매우 빠르며 유기농, 건강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 선진국 형 제품도 등장하고 있음
- 최상층도 있으나 중산층이 없는, 최상, 하층으로 양분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층 시장에서는 신선과일, 통조림, 과자 조미료 등 다양한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임

#### □ 베트남 소비구조

- 베트남 소비자들은 그들 지출의 상당부분을 식품류에 사용하며 식품류와 비식품류 소비비중은 6:4로 식품류 소비비중이 높음
- 대부분이 쌀, 고기, 설탕, 채소기름, 소스와 같은 기본식품 구매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소득 증가는 부가가치 가공식품류에 대한 지출 증가를 유도 하여 최근 유제품 (신선우유, 요거트, 치즈 등), 과자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가족의 가처분소득 확대와 주5일 근무는 조리(read-to-eat)식품, 스낵 및 고급식품 구입 트렌드를 가속화시킴
- 준비된 음식(The pre-prepared food) 아이템은 다지거나 썰은 다양한 식품재료로 구성되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음
- 조리(read-to-eat)식품과 반 조리(semi-prepared) 식품의 다양화에 대한 수요증가는 식품 수입의 증가 유발



□ 베트남 외식산업과 전체적인 식품시장 동향

< 육류, 간편 식품, 유제품, 건강식품시장 전망 >

제품	시장 동향과 전망
육류	2010년 육류시장규모 5억 8,950만 달러 2011~2015년 육류시장규모 연평균 7% 증가 예상 2011~2015년 가공육시장규모 연평균 10% 증가 예상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2011~2015년 통조림식품 시장규모 연평균 10% 증가 예상
유제품	2010년 유제품 시장규모 4억 7,660만 달러 2011~2015년 유제품 시장규모 연평균 7% 증가 예상 신선유, 유제품 스프레드(dairy spread) 매년 11% 증가 전망
건강식품	2010년 건강식품 시장규모 12억 달러 2015년까지 매년 6~7.2% 증가 전망

출처: Food & Beverage Vietnam, July 2011 by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베트남 슈퍼업체인 「Citimart」 社의 Nguyen Thi Anh Hoa사장에 의하면, 「Citimart」 社는 수입 식량·식품의 판매량이 매년30~40%증가하고 있음
- 원인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고가 및 고급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Metro」, 「Lotte Mart」, 「Co.opMart」, 「Maximark」 社에 따르면, 식육으로부터 생선, 밀크, 야채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입품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

□ 인스턴트 식품 동향

- 베트남에서 주로 유통되어지는 인스턴트 품목은 라면, 쌀국수, 커피 등이 있음 그 중에서는 라면 소비가 현저하게 높음
- 베트남은 세계 3위 라면 소비 대국이며 연간 15~20% 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III 베트남 가격 정보

### □ 베트남 온라인 매장 떡볶이 판매가격

- 베트남 온라인 매장에서는 떡볶이를 취급하지 않으며, 인스턴트 라면, 쌀국수, 커피를 주로 취급하였음
- 이베이 베트남에서는 한국제품 해찬들에서 제조하는 떡볶이가 판매되고 있지만, 그것은 떡볶이 양념장이었으며, 온라인 검색 결과 베트남에서 떡볶이는 인스턴트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떡볶이 양념장 그리고 떡볶이 떡을 각각 팔고 있음

업체명	해찬들		
출처	이베이 베트남	<a href="http://www.muabangiatot.com/">http://www.muabangiatot.com/</a>	<a href="http://www.vatgia.com/">http://www.vatgia.com/</a>
제품 이미지			
제품명	Korea Food - Sweet & Hot Spicy Tteokbokki Sauce 150g TOPPOKKI	Tokbokki	Tokbokki 한국 떡
가격	(498.380 VNĐ/ \$22.97 USD)	42000/VNĐ	70,000/VNĐ

## IV 베트남 유통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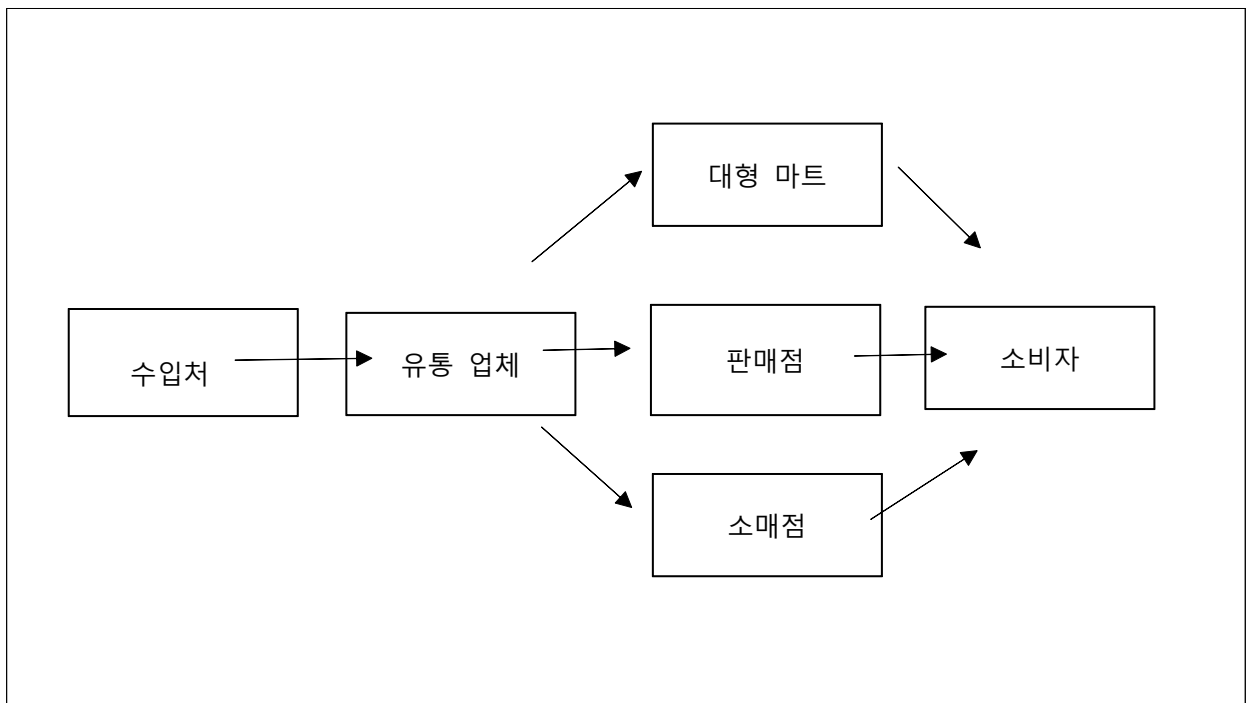
### 1. 한국 식품 유통

- 과거에는 한인 수입상은 한인마켓 공급 중심으로 판매했었으나 최근 한국 식품 수입 증가, 현지인의 한국 식품 관심 증가 등으로 현지유통 매장으로 납품하는 경우 증가
  - 한인마켓은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 20여개, 하노이에 6여개가 있음
  - 베트남 진출기업이 많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호치민에 한인 마켓과 한식당 분포도가 높음
  - 호치민 지역 한인마켓은 3개의 수입상이 공급하고 있으나 하노이는 마켓별로 직수입 하는 경우가 많음
  - 한인 수입상의 경우 한국에 수출 Agent를 두고 콘솔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 아직까지는 한국인 수입상이 가장 많으나 최근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현지인 수입원 한국 식품 취급 증가 추세이며, 한국 농식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나 일부는 핸드캐리, 이삿짐화물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정상적인 수입의 경우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위해 Under Value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 수입의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마켓에 정상 납품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베트남은 수입허가를 받은 현지기업만이 수입가능하며 최근 식품성분 검사서 제출과 품목별 수입등록비 약 500만동(US\$300)을 납부해야 하나

Under Table Money(뇌물) 감안 시 등록비보다 많은 돈이 소요됨

- 한국식품의 주 판매시장은 한인 슈퍼 이지만 최근 현지인 유통채널로 진출 확대되는 추세임
- 교민 10만명을 바탕으로 판매되었으나 최근 한국산 식품 수입 증가, 현지인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현지 채널 확대중이며, 호치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 대부분의 현대식 대형슈퍼마켓에는 한국 농식품을 볼 수 있음
-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면류, 제과류(아이스크림), 소스류, 해조류(김, 미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농산물(버섯류, 배 등)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 베트남 유통 FLOW



출처: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11M.html?BBS\\_ID=19&ARTICLE\\_ID=5012430&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5](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11M.html?BBS_ID=19&ARTICLE_ID=5012430&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5))

### 3. 베트남 유통구조

#### □ 베트남 유통 시장 현황

- 아직까지 식품소매 분야는 재래시장(wet market)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형 슈퍼마켓 형태가 지배하고 있으나 최근 현대적 유통매장 (대형유통매장, 슈퍼마켓)의 확대로 현대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현대적 유통매장 확대속도는 매우 빠르나 아직까지 매출은 재래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10년 호치민, 하노이 시의 현대유통 점유율은 37%이며, 이는 베트남 전체의 24%를 차지함
- 지난 5년간 슈퍼마켓과 쇼핑센터의 수가 급증하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재래유통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임

#### □ 베트남 유통현황 전망

- 2012년 기준으로 슈퍼마켓 215개, 하이퍼마켓 48개, 편의점 및 소형마켓 384개의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중소도시는 대형유통망이 조금씩 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래유통망이 대부분(약 94%)을 장악하고 있음
  - 재래유통망에서 현대유통으로의 변화가 극대화 되면서 베트남의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 대형유통매장 성장률은 2014년까지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직 까지 현대 유통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향후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유통산업으로 성장성이 높음

- 상위 6개 도시 14%의 인구가 대형유통업체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 지역 26%의 인구가 소비한 유통매출이 전체 73%를 차지함

□ 베트남 유통 구조 특징

- 수출업체는 한명의 벤더를 두지 않고 사업 영역에 따라 여러 명의 벤더를 활용하고 있음
- 호치민, 하노이 시장을 분리하여 수입 벤더를 두거나 판매매장 별, 품목별로 수입벤더를 분리하기도 함
- 호치민, 하노이 시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바이어의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기도 함
- 이러한 유통관계는 영업력에 따라 벤더를 활용하여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적인 가격 및 마케팅 전략 운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4. 베트남 유통채널

□ 대형유통업체 유통매장 현황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슈퍼마켓	67	88	115	165	200	215
하이퍼마켓	2	4	8	14	27	48
편의점(소형마켓)	48	62	120	255	312	384
합 계	117	154	243	434	539	647

출처: 최근 베트남 경제동향 및 시장여건 분석 보고서 (2013.02)

□ 대형유통업체 유통매장별 분석

유통체인	진출연도	매장 수	위 치	투자자
METRO	2002	19	호치민 6, 하노이 2, 하이퐁 1, 다낭 1, 동나이 1, 컨터 1 등	독일 (Metro Cash & Carry)
Big-C	1998	21	호치민 6, 하노이 4, 하이퐁 1, 다낭 1, 후에 1, 동나이 1 등	프랑스(Casino Group)
Parkson	2005	8	호치민 5, 하노이 2, 하이퐁 1	말레이시아 (Parkson Vietnam Co., Ltd)
Dairy Farm (welcome)	2006	3	호치민 1, 컨터 1, 끼엔장 1	홍콩 (Giant Southasia Vietnam Co.Ltd)
Seiyu	1998	1	하노이 1	일본 (Hanoi Seiyu Corporation)
롯데마트	2008	4	호치민 2, 동나이 1, 다낭 1	한국 (롯데마트)
Saigon Coop	1998	50	호치민 25, 붕따우 등 남부지역 18, 후에 등 중부지역 3, 하노이 2	베트남(Saigon Union of Trading Co-operation)
HAPRO	2006	28	하노이 22, 박칸 2, 차이응우웬 1, 타이빙 1, 하이즈엉 1, 타잉호아 1, 닌빈1 (소형매장 10개 포함)	베트남 (Hanoi Trading Company)
Maximark	1996	4		베트남 (An Phong)

□ 베트남의 편의점 시장

- 베트남에서 소형 슈퍼마켓은 현지인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매장이며, 편의점(24시간 오픈)은 아직 대중화된 매장 형태는 아님
- 전통적인 Grocery Store와 Street Vendor 형태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오픈 편의점은 베트남 현지인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음

- 현재 편의점은 대도시(특히 호치민)의 외국인 주거단지 또는 관광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 「Shop&Go」社 대표자인 Aaron Yeoh It Ming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이 많은 Phu My Huong과 1군 매장 매출이 가장 좋으며, 하노이 보다는 호치민에서의 매출이 더 높음
- 편의점형태는 소비자가 현대적인 유통에 익숙해진 후 발전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매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 계열인 「Shop&Go」社 를 시작으로 Circle K(캐나다), Family Mart(일본) 등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Family Mart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15년까지 3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두고 있음

□ 베트남의 주요 도매시장

- Long Bien Wholesale

- 위 치 : Phuc Xa ward, Ba Dinh District, Ha Noi
- 규 모 : 27,148m<sup>2</sup> (하역장 5,278m<sup>2</sup>포함)
- 1,087개의 도매상이 있으며 유통물량의 약 38%는 과일, 39%는 채소류임
-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 과일 및 채소 공급을 전담하고 있으며 매일 300톤의 물량이 유통됨에 따라 매일 수백대의 농산물 공급차량이 진입함
- Long Bien Market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는 남쪽지역(North Thang Long)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Long Bien Market의 소매기능은



인근 Dong Xuan market과 Bac Qua market으로 옮기고 있음

< Long Bien Market >



- Tam Binh Wholesale Market

- 2003년 10월 오픈한 베트남에서 최초 현대화된 도매시장이며 농산물 무역거래 센터
- 2002년 Thu Duc Corporation Housing Development Co의 182.4십억 만 동 투자에 의해 호치민 시의 소규모 시장을 통합시켜 하나의 도매시장으로 건설
- 남부 및 중앙 고원지대 농산물이 집하되어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과일 및 채소류 유통물량이 많으며 1일 평균 2,000톤의 수입 농산물이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
- 규 모 : 20ha이상(Housing Market A, B, 수산물 도매시장인 C와 Market Yard로 구성)

< Tam Bimh Market >



# V 베트남 통관 정보

## 1. 관세현황

< 2013년 베트남 떡볶이 관세율 >

HS Code	명칭	관세율
1901.90-9990	기타	5%

출처 : <http://www.customs.go.kr/>

## 2. 통관 절차

### 통관 기간 및 비용

수출 절차	기간(일)	비용(USD)
서류 준비	12	130
통관수속	4	95
항만 및 터미널 처리	4	175
내륙 운송 및 취급	1	200
합계	21	600

### 베트남 통관 및 수입검사

-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이어들은 해당 상품의 수입 유통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며,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인내심이 요구’ 되는 과정으로 인식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유통하기에 앞서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규정

- 기술 규정·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인가절차와 식품의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검역·등록 절차로 해외에서 수출되는 과자·음료·유제품·주류·라면 등 가공식품 전반에 적용

#### □ 통관 시 유의사항

- 호찌민 시내 한국 식품 수입딜러로 활동하는 「Van Think Phu」社は 기술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인가서류를 발급받기까지 통상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베트남 식품청(VFA)」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과도한 수정을 요구. 원재료 리스트, 영양성분에 대한 기재 내용을 비롯해 심지어 서명 위치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체크함
- 하노이에 위치한 「식품청(VFA)」은 답변을 오직 우편을 통해서만 전달하며 호찌민에 있는 사무실까지 의견이 전달되는데 몇 주일이 소요됨. 이로 인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마다 보름 이상이 소요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대기시간을 요함
- 제출 서류 중 수출업체에서 발급됐음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는 식품청의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임
- COA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식품청은 건별로 명확한 지침 없이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의 자료 준비를 어렵게 만듦
- 한편, 기술 및 식품 안전 규정 인가절차와 비교해 지역별 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등록은 「식품청(VFA)」만큼 관료주의적 성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세관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 상품을 직접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때때로 통관 지연을 야기하며, 식품별 검역기준 미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21일까지 기간 소요
- 이처럼 일관성 없는 처리속도로 유통기한이 짧은 김치·막걸리 등 발효식

품은 유통기한이 단축되는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현지 바이어의 선호품목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출처: 트레이드네비 (www.tradenavi.or.kr)

□ 통관 절차

①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물품에 대하여, 상업적 계약에 의한 수입여부, 재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지 여부, 수출 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 여부등에 대해 수입 관련 증빙(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지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li> </ul>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Permit) 대상 물품은 수입 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산업무역부는 5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행함</li> <li>- 수입신고 할때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수입 대상 물품에 따라 수입 허가, 라이선스(석유류), 원산지 증명서, 면세허가(담배류) 등 통관에 필요한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li> <li>- 수입신고는 입항지 세관에 서류(Document) 제출 또는 e-Customs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li> </ul>

## ② 심사 및 검사

심사(검사)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당국은 수입신고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 검사를 실시함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지함</li> <li>- 전자신고 (e-Customs)에 의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함</li> <li>- Green Flow : 전자 신고(e-customs)에 신고 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는 대상</li> <li>- Yellow Flow : 수리 전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하는 대상</li> <li>- Red Flow: 수리 전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서면 심사하고, 물품 검사 또한 실시하는 대상</li> </ul>
-------------	--

## ③ 관세 납부

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 수리 후 규정에 따라 관세 등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 등은 물품 반출 전 즉시 납부 대상/ 반출 후 납부 대상(납부 유예)으로 구분하여 부과됨</li> <li>- E-customs를 통해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경우는 월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li> </ul>
-------	---

## ④ 물품 반출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 전/후 관세 납부 대상에 따라 각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 반출이 허용됨</li> </ul>
-------	--

## VI 베트남 검역 정보

### □ 검역 또는 검사절차

-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자재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포장용구, 식품포장재, 식품용기는 검사의 대상이 됨
- 단 개인이 휴대하는 관세면제 범위내의 자가소비용 식품, 외교관 영사관의 수하물에 포함된 식품,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전시회 참가 등)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식품 시험용, 연구용 식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No.38/2012/ND-CP 제14조 )
- 이와 관련 보건부가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코드별 수 HS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D-BYT」 은 다음 13개 품목을 수입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하고 상세한 것은 별표에 코드별로 정하고 있음

### ■ 검역 검사대상 13개 품목

- 고기/어류의 조제품
- 동물성/식물성 유지(油脂)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 야채/과일로 만든 조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콜 음료, 식초
- 식품포장재
- 기능성 식품, 건강보호상품
- 식품첨가물

- 
- 상기 품목의 수입에 대해 상품도착 일전까지 검역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 검역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다음과 같음 (No.23/2007/QD-BYT 제 6조, 제 10조)

■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신청 수순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 제출, 상품도착 일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
- 검사 실시(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기초기준과 베트남기준 (TCVN) 을 비교후 결과 통지

※ 베트남 국가기준 (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품질 측량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 (유료 판매)

- 또한 알콜, 맥주, 청량음료수, 유제품, 식물성기름, 밀가루제품, 전분제품, 과자, 빵, 잼, 및 이 제품들의 포장재를 포함한 수입제품 화물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소관 하는 수입제품의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28/2013/TT-BCT의 적용을 받게 됨
- 이들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함

■ 필요서류

-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 보건부 또는 보건부 위탁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적합의 수리서 또는 규정적합 인정서의 공증 첨부 사본
- 화물수입계약서 및 포장명세서의 공증첨부 사본
- 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첨부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 동물성 식품의 제조시설등록

-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동물성 식품에 관한 위생과 안전검사에 관한 통지 No.25/2010/TT-BNNPTNT」의 적용을 받게 됨 동물성 식품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함 (同 통지 제5조)

■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베트남 당국이 등록된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것

■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취득하고 있을 것

■ 통관 시에 베트남 당국이 검사한 물품일 것

□ 식물성 식품의 수입규제

- 식물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베트남이 수출국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의 수입 이어야 하고 적절한 포장과 저장으로 라벨표시 규제에 따를 것이 요구됨 (식물성 수입식품의 위생 안전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 통지No.13/2011/TT-BNNPTNT 제 5 조 1항 참조/ ※No.05/2013/TT-BNNPTNT 에 의해 일부 개정됨)

- 한국은 2011년 11월 1일부로 수출 가능 국가로 등록되어있음 (<http://www.nafiqad.gov.vn/a-news-events/lists-of-foreign-establishments-approved-for-export-to-vietnam/>)



---

□ 자유판매증명서

- 베트남 보건부가 관할하는 기능성식품, 미량(微量) 영양소, 보조식품, 식품 첨가물, 음용수 광천수의 수입에 있어서 수출국이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CFS)의 제출이 요구됨 (수출품 및 수입품에 적용되는 에 관한 결정 Certificate of Free Sale No.10/2010/QD-TTg)
-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문으로 발행하며 “자유판매증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제품으로,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 국가기관 발급서류로 변호사 공증절차는 필요 없으나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VII 베트남 라벨링 정보

### □ 식품라벨 표시규제

- 식품에만 한정된 라벨 표시규제는 아니지만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령 No.89/2006/ND-CP」 및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 N」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 상품표시 규제와 식품표시에 관한 기재가 있음
- 단, 포장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선(生鮮) 식품 및 가공식품에 이런 제한은 없음

### 1) 표시 언어

- 베트남어 표시가 요구됨 (동 시행령 제9조에 「상품표시 필수기재 내용은 제 9조 제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어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기재내용은 베트남어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베트남어 문자 사이즈보다 커서는 안 됨
- 또한 규정된 내용이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은 규정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附隨)표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상품의 원래 표시가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됨
- 또한 의무기재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베트남어로 기재된 내용은 원래 표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 제 1장 제 3조)
- 또한 특정분야에 한해 라틴문자로 기재되는 것이 허가되어 있음 (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

- 라틴어로 기재가 허가되는 경우

- 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명 또는 학명
- 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국제명 또는 학명
-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번역해도 의미가 없는 상품의 구성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명 또는 학명
- 상품을 생산 또는 위탁생산한 외국기업명 및 주소

## 2) 표시기재내용

- 전 상품 공통항목 (시행령 No.89/2006/ND-CP 제2장 제11조 )

- 상품명
- 상품에 대해 책임을 가진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또한 상품의 성질에 따라 同 시행령 제12조 또는 기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 50종류의 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음 ( 동 시행령 제11조 제 2항) 이 중 식품관계는 제 1~4항, 제 6항이 해당함

- 라벨 의무기재사항

- 제 1항 (식량) : 용량, 제조일, 상미(賞味)기한
- 제 2항 (식료품):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구성성분 및 성분량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제 3항 (非알콜 음료):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구성성분 및 성분량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제 4항 (알콜 음료): 용량, 에탄올, 함량 보관방법 ( 와인의 경우 )
- 제 6항 (식품 첨가물):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성분량, 사용방법 및 보관 방법

- 
- 이중 여러 개의 항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합한 기능 및 용도로 분류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 2항 제 1조의 보충사항)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는 “식료품” 이 아니라 음료로 분류됨

### 3) 상품명

- 상품명은 상품의 본질 및 효용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구성성분의 명칭이 상품명 또는 상품명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No.89/2006/ND-CP 제 18조 제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성분량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칼슘의 함유량이 높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칼슘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 4) 판매업자의 명칭, 주소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는 아래의 각 규정에 따라 기재함
  - 제1항 (상품이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생산시설의 주소를 기재
  - 제2항 (상품이 베트남에서 유통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와 함께 수입자의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 제3항 (외국기업의 판매 대리점인 조직 및 개인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와 함께 상품판매를 대리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 제4항 (상품의 독점판매권이 위임 허가되어 있는 경우)
    -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독점판매권을 위임하거나 허가한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 5) 원료품명/성분 표기

- 시행령 제18조에 구성성분 및 성분량의 기재에 대한 No.89/2006/ND-CP 규정이 있음

### ■ 구성성분의 기재

-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형태가 변해도 최종제품에 존재하는 원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품에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구성성분의 성분량을 기재해야 함 (18조 1항)

### ■ 성분량의 기재

- 구성성분과 함께 각 구성성분의 량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 기재된 성분량은 상품의 성질 또는 상태에 따라 상품의 단위중량(單位重量) 또는 총중량(總重量)에 대한 성분중량, 체적(體積)에 대한 성분중량, 체적에 대한 성분체적, 성분중량의 백분비 또는 성분체적의 백분비 중 하나가 됨 (18조 제2항)(예를 들어 쇠고기 소시지는 「쇠고기 소시지(쇠고기 30%)」 라고 상품명 옆에 쇠고기의 정량을 기입하거나 구성성분의 내용표시에 쇠고기 30%라고 기재해야 함)

### ■ 식품

- 성분량이 많은 순으로 구성성분을 기재함 (제18조 제 3항)

### ■ 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 첨가물의그룹명칭 첨가물의 명칭 국제코드 (코드가 있는 경우)를 기재해야함
- 첨가물이 향료, 감미료, 착색료인 경우 천연 물질인지 합성 물질인지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함
- 단 다음의 동시행령 <부표Ⅲ>에 정해진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성성분과 성분량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 부표Ⅲ : 상품의 구성성분 성분량 기타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령No.89/2006/ND-CP) 중 가공식품에 관한 부분

- 식품: 수산물(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가 첨가된 경우)

-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의 성분량을 기재함
- 식품첨가물: 2 이상의 성분이 같은 포장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포장내의 성분 비중이 많은 순으로 기재함

## 6) 영양표기, 칼로리 표기

- 현 시점에서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표기/칼로리 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단 예외적으로 의약품 영양식품, 임산부 및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영양보조식품 등은 영양 수요 레벨에 관한 표시가 필요함 (시행령 No.38/2012/ND-CP 제18조)

## 7) 알레르겐 (Allergen) 표기

- 인체·동물 또는 환경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리스트에 기재된 보존료를 규정량 이상으로 함유한 물질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구성성분과 보존료의 명칭을 표시 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No.89/2006/ND-CP 제9조제3항)
- 또한 상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와 경고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식품첨가물의 성분을 표시 할 경우에는 「Dòng cho thực phẩm(식품용)」이라고 기재함(同 시행령 제9조 제5항 부표IV)
- 한 편 정보 및 경고표시는 문자, 화상, 국제관례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 기호 등으로 기재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2장 제7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및 경고」의 보충사항)

## 8) 상미(賞味)기한/소비기한/제조일의 표기

- 상품의 성질에 따라 제조일 에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소비기한: 특정 시점이 지난 상품이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시점(同 시행령 제3조 제10항)

- 상미기한: 특정시점을 지나면 상품 본래의 품질이나 사용가치를 보증할 수 없는 시점(同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품의 제조일 소비기한 및 상미기한은 양력의 일·월·년 순으로 기재해야함 (한국의 기재순서와는 반대) 일·월·년을 의미하는 숫자는 2자리로 기재하지만 년의 경우 4자리로 기재해도 무방함 동일 시점의 일·월·년은 같은 줄에 기재해야함 (同 시행령 제16조)
- 표시방법에 있어서 제조일은 NSX(Ng $\square$  S $\acute{a}$  n Xu $\acute{a}$ Xt), 소비기한은 HSDHSD(H $\grave{a}$ Dn S $\grave{u}$ D $\grave{u}$ ng), 상미기한은 HBQ(H $\acute{a}$ Hn B $\acute{a}$ Bo Qu $\acute{a}$ Qn)이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할 필요가있음(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N 제2장 제5조)
- <예> 제조일이 2014년 2월 1일 소비기한이 2015년 1월 31일일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 NSX : 010214 HSD: 310115
  - NSX : 01022014 HSD: 31012015
  - NSX : 01/02/14 HSD: 31/01/15
  - NSX : 010214 HSD: 12 month
  - 이러한 약자를 숫자와 병기해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조일 또는 소비 기한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시 중에 보완해야 함
- 또한 소비기한은 최종 소비기한 또는 추천표시기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기한을 나타내는 경우 에는 상기와 같이 HSD를 이용하여 표시함
- 추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S $\grave{u}$ d $\acute{u}$ ng t $\acute{o}$ t nh $\acute{a}$ nt tr $\acute{u}$ oc...(…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후에 날짜를 기재함

## 9) 용량의 표기방법 내용량의 오차 허용범위

- 상품 용량의 표기에 대해서 측정 단위로 표기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측정단위에 관한 베트남의 법률규정에 따라 그램(g)법, 리터(l)법, 미터(m)법으로 기재되어야함 (시행령 No. 89/2006/ND-CP 제2장 제15조)
- 개수로 측정되는 상품은 자연수를 기재하며, 하나의 포장에 복수의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각 상품의 용량 및 상품의 총량, 또는 각 상품의 용량 및 상품의 개수를 기재해야 하며, 한편 용량의 기재방법은 同 시행령부표 I 에 규정되어 있고 이중 식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상품 용량의 기재 방법에 관한 규정 >

No	상품의 상태, 형상, 또는 종류	기재방법
1	고체 또는 기체의 상품	순(純)중량
	고체와 액체를 혼합한 상품	혼합물의 순(純)중량 및 고체의 중량
	압축 기체의 상품	압축 기체의 순(純)중량 및 용기의 순(純) 중량 또는 압축 기체의 순(純) 중량 및 압축 기체와 용기의 총(總)중량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상품	20°C에서의 순(純)중량 또는 실(實)체적
2	스프레이 캔에 들어 있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상품	페이스트(paste) 상태의 물질 및 스프레이 캔 의 순(純)중량
3	액체의 상품	20°C에서의 실(實)체적
	스프레이 캔에 들어 있는 액체 상태의 상품	액체의 물질 및 스프레이 캔의 20°C에서의 실(實)체적



- 한편 내용량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 No.89/2006/ND-CP 제10조 「상품표시의 기재책임」에 「부수적 표시를 포함한 상품표시의 기재내용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상품의 품질을 바르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기재책임에 따른 표시에 오차가 있을 경우 「상품판매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No. 06/2008/ND-CP」 제23조(시행령 No.112/2010/ND-CP 제1조 제14호에 의해 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10) 표시 위치 문자 크기

- 상품표시는 규정된 표시내용의 전부가 쉽게 인식되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또한 외장을 개봉해서는 안되거나 개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내용 표시가 외장에 표시되어야 함 (시행령No.89/2006/ND-CP 제6조)
- 규정내용의 모두를 표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어도 상품의 명칭,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상품의 양(量), 제조일, 소비기한 및 상품의 원산지는 기재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은 상품에 첨부 된 서류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기재내용이 표시된 곳을 나타내야 함
- 상품표시의 기재에 책임을 지닌 조직 및 개인은 상품표시의 크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단 상품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전부가 기재되어 그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同 시행령 제7조)
- 표시사항의 문자, 숫자, 그림, 화상, 마크 및 기호는 명확해야 하며 규정된 기재내용은 문자 또는 숫자의 색상이 배경색과 대조적이어야 함 (同 시행령 제8조)

## 11) 라벨 표시의무의 적용

- 부수적 표시를 포함한 표시의 기재내용은 명확, 정확해야 하고 상품의 품질을 바르게 표시해야하며(시행령No.89/2006/ND-CP 제0조) 국내유통을

---

위한 상품이 베트남에서 생산, 조립, 가공, 포장되는 경우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짐

- 또한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의 원래 표시가 동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한 조직이나 개인이 원래 표시를 그대로 둔 채 상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부수적인 표시를 기재해야함 (동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
-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이 계약에 의해 외국의 생산자 등에 수입상품의 표시기재를 위탁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유통할 경우 상품표시의 기재책임은 「수입자」가 지게 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1장 제4조 「상품표시의 책임」)

## 12) 기타 유의사항

### □ 방사선 조사(照射)식품

-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사선 조사식품 방사선으로 살균한 식품은 식품 안전법(법률제55/2010/QH12)에 따라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đã qua chiếu xạ」로 표시하고 (동법제44조 제2항 c호),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제38조 제2항)

### □ 유전자 조작식품

-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라는 표시를 붙여야함 (식품안전법 제44조 제2항 d호)

### □ 기능성 식품

- 기능성 식품은 인체기관의 운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으로 영양가를 가지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거나, 병리학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식품으로 정의됨 (보건부공포 「기능성 식품의 제품관리에 관한통지 No.08/2004/TT-BYT」)

- 
- 이러한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chức năng」 표시를 붙여야하며 치료약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식품안전법제44조 제2항 a호)
  - 또한 기능성 식품의 표시내용은 기타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同 통지 제2장 제3조)

■ 기능성 식품의 표시 조건

- 특수목적을 지닌 식품의 경우 보조식품, 보건용 식품, 기능성식품, 다이어트식품, 약용(藥用)영양식품 등 종류의 명칭, 사용대상, 효과 적정섭취량 사용금지대상,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있는 경우)을 취급설명서에 기재함
- 생물학적 활성물질 함유식품의 경우 「본 식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료약을 대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시하고 부수적 표시사항에 기재하며, 생물학적 활성물질 함유식품은 인체기관의 운동을 보조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거나 병리학적인 위험을 경감하는 기능을 가진 식품을 의미 함
- 기능성 식품의 표시사항에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약품을 대체하는 식품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됨

---

---

## VIII 베트남 바이어 정보

---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

※ 참고자료

- 관세청 :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GTA : [www.tradestatistics.com/gta](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KOTRA : [www.global 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 KATI : [www.kati.net](http://www.kati.net)
- Google : [www.google.com](http://www.google.com)
- EC21 Research&Consulting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 <http://tradenavi.or.kr/>